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(안)

의안
번호

193

제출년월일 : 2004. 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이관됨에 따라
- 당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용하던 도유건물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
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심의사항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(청주의료원 구병동)
- 규 모 : 연면적 4,368㎡(1,321평)중 2~3층 2,166㎡(655평)
-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
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
- 조 건 : 5년간 무상으로 하되 필요시 기간연장
- 신청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(도출연법인)

3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 제83조(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)
-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(잡종재산의 대부)
-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(잡종재산의 대부기간)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
조례제7조(재산출연), 제9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

관계 법령 발췌

< 지방재정법 >

제83조 (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)①잡종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.

② 잡종재산의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및 사권 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, 대부료의 산정방법, 대부료의 감면, 가격평가, 매각 대금납부 방법, 대물변제의 범위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< 지방재정법시행령 >

제88조 (잡종재산의 대부) ① (생략)

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6.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

제90조 (잡종재산의 대부기간)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,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으로 하고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.

<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>

제7조(재산출연)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
2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
3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, 후원인 등의 출연금

제9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